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5. 31 선고 2021가단934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원고승계참가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변 론 종 결 2022. 4. 12.

판 결 선 고 2022. 5. 31.

주 문

1.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외 망 G(주민등록번호 1 생략)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13,333,333원, 피고 D, E, F은 각 8,888,888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09. 5. 21.부터 2021. 9. 15.까지는 연 3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승 계 참 가 취 지

청구취지 : 원고에게 피고 C는 13,333,333원, 피고 D, E, F은 각 8,888,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. 5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3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승계참가취지 :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는 13,333,333원, 피고 D, E, F은 각 8,888,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. 5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3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망 G에 대하여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5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을 가지고 있다.

나. 망 G은 2016. 9. 21. 사망하였고, 공동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C는 3/9, 자녀인 피고 D, E, F은 각 2/9의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1. 11. 29.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라. 원고승계참가인은 2021. 12. 8.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.

마. 한편 피고들은 2021. 8. 30.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424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

청구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11. 17. 위 심판을 수리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 내지 6호증이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.

그러나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원고는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는 13,333,333원(= 40,000,000원 × 3/9, 원 미만 버림)을, 피고 D, E, F은 각 8,888,888원(= 40,000,000원 × 2/9, 원 미만 버림)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G의 사망 후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G으로 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.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, 피고 C는 13,333,333원, 피고 D, E, F은 각 8,888,888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09. 5. 2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. 9. 15.까지는 연 3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24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혜승